

서울특별시 금천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

[엄셋별 의원 대표발의]

의안번호	2740
------	------

발의일자 : 2025. 5. 29.

발 의 자 : 엄셋별 의원

이인식 의원

1. 제안이유

서울특별시 금천구 관내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행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(안 제1조 및 제2조)

나. 적용범위 및 구청장의 책무(안 제3조 및 제4조)

다.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(안 제5조)

라. 실태조사 및 현황관리(안 제6조 및 제7조)

마. 협력체계 구축(안 제8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1) 「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」 제3조 및 제4조
- 2)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 제4조
- 3)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조

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예산조치

다. 기 타

- 1) 입법예고 : 2025. 5. 30. ~ 2025. 6. 5.

서울특별시 금천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관내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보도”란 「도로교통법」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.
2. “점자블록”이란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장애인 편의시설 중 시각장애인의 보행편의를 위한 점형블록과 선형블록을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(이하 “금천구”라 한다) 관내에 설치된 보도에 적용한다.

제4조(구청장의 책무)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보도를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제5조(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금천구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1. 보도 점자블록 설치 현황 및 관리실태
2.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유지보수 계획
3. 도로 여건, 교통량, 지역주민 의견을 토대로 한 보도점자블록 정비계획
4. 그 밖에 보도점자블록 정비 관리에 필요한 사항

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포함된 경우, 그 부분에 대하여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.

1.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」 제5조에 따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
2.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보도포장 관리 규칙」 제4조에 따른 보도정비 중장기계획

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의견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6조(실태조사) ① 구청장은 금천구 관내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·관리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.

제7조(현황관리) 구청장은 보도에 설치되어 있는 점자블록 현황을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.

제8조(협력체계 구축) 구청장은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각장애인 단체 등 관련 기관·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 법령

□ 「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」

[시행 2023. 9. 15.] [법률 제19234호, 2023. 3. 14., 타법개정]

제3조(보행권의 보장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의 안전 보장, 질서 유지 및 복리 증진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민이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진흥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장애, 성별, 나이, 종교,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·지역적 사정 등에 따라 보행과 관련된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

③ 보행권을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한 정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.

1. 시설물의 설치, 차량의 소통 등 보행여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제도 및 사업 등으로 인하여 보행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협과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해당 제도 및 사업 등에 따른 편익보다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하여야 한다.

2.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로의 폭,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량 등이 유사한 지역 간에는 보행여건의 격차가 심각하게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
3. 보행정책의 수립·추진은 보행자의 안전과 목표지점에서의 접근의 편리성과 함께 삶의 공간으로서의 쾌적성 및 미관성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.

4. 보행권 증진 및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간에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이 체계적·합리적으로 조성·정비·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④ 안전한 보행환경이 적절히 조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행자에게 불리하게 책임을 부과하거나 법률을 적용·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자길을 통행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, 임산부, 어린이, 장애를 입은 사람 등 스스로의 힘으로는 보행이 불편한 사람이 차별 없이 보행자길을 안전하고 편리하게通行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□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

[시행 2025. 2. 17.] [법률 제19674호, 2023. 8. 16., 일부개정]

제4조(국가 등의 책무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

□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」

[시행 2023. 6. 29.] [법률 제19302호, 2023. 3. 28., 일부개정]

제6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,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